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김성진 의원 외 10명)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성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
----------	-----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김성진, 이수경, 박창석, 임무석,
안희영, 신호광, 이춘우, 김준열,
방유봉, 한창화, 남영숙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어업인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지역의 수산자원을 보존·관리·이용이 필요함
- 이에 자율적인 수자원 관리, 어업경영 개선, 어업질서 유지 등 어업인이 자율관리어업을 하기 위해 등록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육성·지원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나. 어업·어촌 발전주체인 공동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의견첨부
-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 해당부서 검토의견 : 의견 없음

6. 참고사항

- 발의 및 찬성의원 서명 명부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관리어업”이란 어업인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지역협의회에서 선정된 공동체를 말한다.
3. “자율관리어업 지역협의회”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에 설치·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업·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 및 어업질서 유지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국내·국외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공동체 선정 및 취소, 규약심의
2. 공동체 평가, 우수공동체 추천
3. 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가 심의 요청한 사항
4. 공동체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협의회 구성 및 인원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③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동체 지원)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 자율 관리어업 활성화 사업
2. 어장관리·수산자원관리·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3. 자율관리어업 파급·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4. 우수공동체로 육성·발전하기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
5. 그 밖에 공동체 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공동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체

□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어업의 자율관리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 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어업의 자율관리 지원)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 단체(이하 "자율관리어업공동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로 한다. <개정 2013. 3. 24.>

1. 어촌계원

2.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3.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②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규약을 제정하여야 한다.

1. 폐어구(廢漁具)의 수거, 해적생물(害敵生物)의 제거, 해중림(海中林)의 조성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2. 어구사용량의 축소, 그물코 크기의 확대, 휴어제(休漁制)의 운영 등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 생산·판매, 체험어장의 운영 등을 통한 어업 외의 소득증대 등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4. 불법어업 근절대책,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간 분쟁 해결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어장관리, 수산자원관리 및 경영개선 등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4.>

④ 제3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어업의 자율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4.>

□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시·도 지역협의회) ① 각 시·도 단위로 설치하며 협의회장은 수산담당국장이 되고 자율관리어업 담당부서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하며 시·도 담당국장 및 과장, 시·군·구 담당과장, 수산사무소장, 공동체위원장 대표, 수산연구소(담당), 지구별·업종별 수협장 등으로 구성 한다.

③ 시·도 지역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선정 및 취소, 규약 심의, 사업실태 점검
2. 공동체 평가, 우수공동체 추천
3. 협의회장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심의 요청한 사항 등 심의

④ 기타 협의회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시·도 지역협의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제14조(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2조제1항의 공유수면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 조항에 규정된 개인사유지와 사유수면을 대상으로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마을어업 공동체 : 어촌계원 또는 자율관리어업 구성 지역 내에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5호에 따른 양식어업 중 바닥식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자 [전문개정]

2. 양식·어선어업 공동체 : 수산업법에 의거 면허·허가·등록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3. 내수면어업 공동체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계원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제16조(공동체 등록) ① 수산사무소장은 시·도지사가 통보한 공동체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체를 방문하여 시·도지사가 통보한 규약과 사업내용을 확인 후 공동체현황을 자율관리어업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기술지도 등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산사무소장은 시·도지사가 신규로 선정하여 통보된 공동체의 참여유형이 현장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정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법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해양수산과	제2조	정의하고 있는 사항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에서 중복하여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더구나 제2호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해서는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제3호에 정의되어 있는 민간단체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는바 삭제 필요.
	제7조	지역협회의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규정되어 있고,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시·도 지역협의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해당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2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김 덕 환
입 안 주 무 부 서	정책기획관	통 보 (조 치) 일	2018. 11. 16.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요인 없음.		

평 가 항 목 별 검 토 자 료

□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X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X	① 구체적·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주관적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X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X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 개 성	X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4 해당부서 검토의견 (해양수산물)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해양수산물	공동체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제4조)	의견없음
	어업·어촌 발전 주 체인 공동체의 책무 (제5조)	의견없음
	지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6조)	의견없음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제8조)	의견없음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8조(공동체 지원)
 - 1.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사업
 - 상기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를 통해 매년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음
 - ⇒ '19년 예산 :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5. 그 밖에 공동체 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18년 현재 도내에는 포항시 등 12개 시·군의 112개의 단체(참여인원 : 4,027명)가 참여하는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경상북도연합회가 '10. 4. 13일 결성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이를 육성·장려하기 위한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연간 4천만원 내외의 도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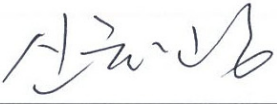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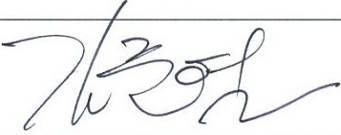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됨.

4. 작성자

- 해양수산과 지방해양수산주사 이진환 (054-880-7723)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성명	서명 및 날인	비고
김 성진		
이 두명		
박 창석		
이금 무식		
상 희영		
신 현광		
이 춘우		
김 준열		
박 흥봉		
이한 장호		
남 영숙		